

#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과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2025. 12.

공탁금관리위원회



## 목 차

I. 일반사항 .....	1
II. 제안요청 내용 .....	5



## I

## 일반사항

### 1. 용역 개요

#### 가. 용역명

-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용역

#### 나. 연구의 필요성

- 법원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법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여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
- 은행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료,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인지대, 개인회생변제금, 등기수수료 등의 중요한 자금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법원에서는 은행의 자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시스템, 특히 은행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2025. 1. 31.자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으로 인하여 법원과 은행의 업무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각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시스템 오류나 전면적 시스템 개편에 있어서 정책부서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이기도 함
- 따라서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분석한 후 궁극적으로 법원입장에서의 취약성 또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장·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이를 위해서 법원의 자금관리를 위한 은행의 전산시스템(보관·중계·정산 등)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 구축비용, 업무 담당 인원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3. 용역기간 및 예정가격

### 가.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간

- ▣ 다만,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나. 예정가격

- ▣ 금 팔천 사백만 원정(84,000,000원)

- 기업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은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및 협상 후 결정하되,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

## 4.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 입찰참가 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납부 대신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함
-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6. 추진 일정

- 입찰 공고일 : 2025. 12. 16.
- 제안서 접수 : 2026. 1. 26. ~ 2026. 1. 27.
  - 접수시간 : 09:00 ~ 17:00 (대체)공휴일 및 주말(토·일) 제외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 제출장소 : 대법원 동관 443호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 2. 5. 16:00/ 대법원 회의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2. 5. 17:00/ 대법원 동관 443호 공탁법인심의 담당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함
  - 협상대상자 확정 : 추후 지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추후 지정
- ※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I 제안요청 내용

### 1. 용역명

- ▣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 연구(과업) 내용

#### 1) 각 자금 관리 시스템의 정의

- ▣ 공탁금 전산시스템

- 공탁전산시스템(재판사무시스템)

- 일선 공탁업무 담당자들이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임

- 공탁연계시스템 :

- 공탁전산시스템과 계정계시스템의 자료를 송수신하는 프로그램임

-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은 자체 개발하여 사용중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신한은행에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함

- 2010년 10개 보관은행에 대해 EAI솔루션<sup>1)</sup>을 도입하여 공탁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2025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오픈 시 공탁금, 보관금 연계를 위해 10개 보관은행에서 ESB솔루션<sup>2)</sup>을 도입, 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계정계시스템(은행시스템)

- 공탁금 보관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공탁금의 지급,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임

- 공탁금 보관은행(10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함

1) EAI :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으로 이종 시스템 간 연계 방식

2) ESB : Enterprise Service Bus로 EAI의 단점을 보완한 표준 연계 방식



## ▣ 법원보관금 전산시스템

### ● 보관금 전산시스템(재판사무시스템 소송비용)

- 각급법원 담당자들이 보관금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며, 2025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일부 개선함

### ● 보관금 연계시스템

- 2025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오픈 간 공탁연계만 이용하던 EAI연계시스템을 보관금 연계에도 적용하여 10개 보관은행에서 ESB솔루션을 도입, 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 계정계시스템(은행시스템)

- 공탁금 보관은행(10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함

## ▣ 기타 전산시스템

### ● 인지대, 송달료, 회생변제금 시스템

- 2025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오픈 간 신규 구축한 ESB연계서버를 통해 종전의 SCServ연계시스템<sup>3)</sup>을 대체하여 법무자금결제센터(신한은행)와 전용통신망을 통해 전문통신 처리
- 기존 법무자금결제센터에서 유지관리하던 PL/SQL을 차세대 소송비용WAS 서버의 ESB Adaptor을 통해 실행하도록 구축함(송달료 연계방식)

### ● 가상계좌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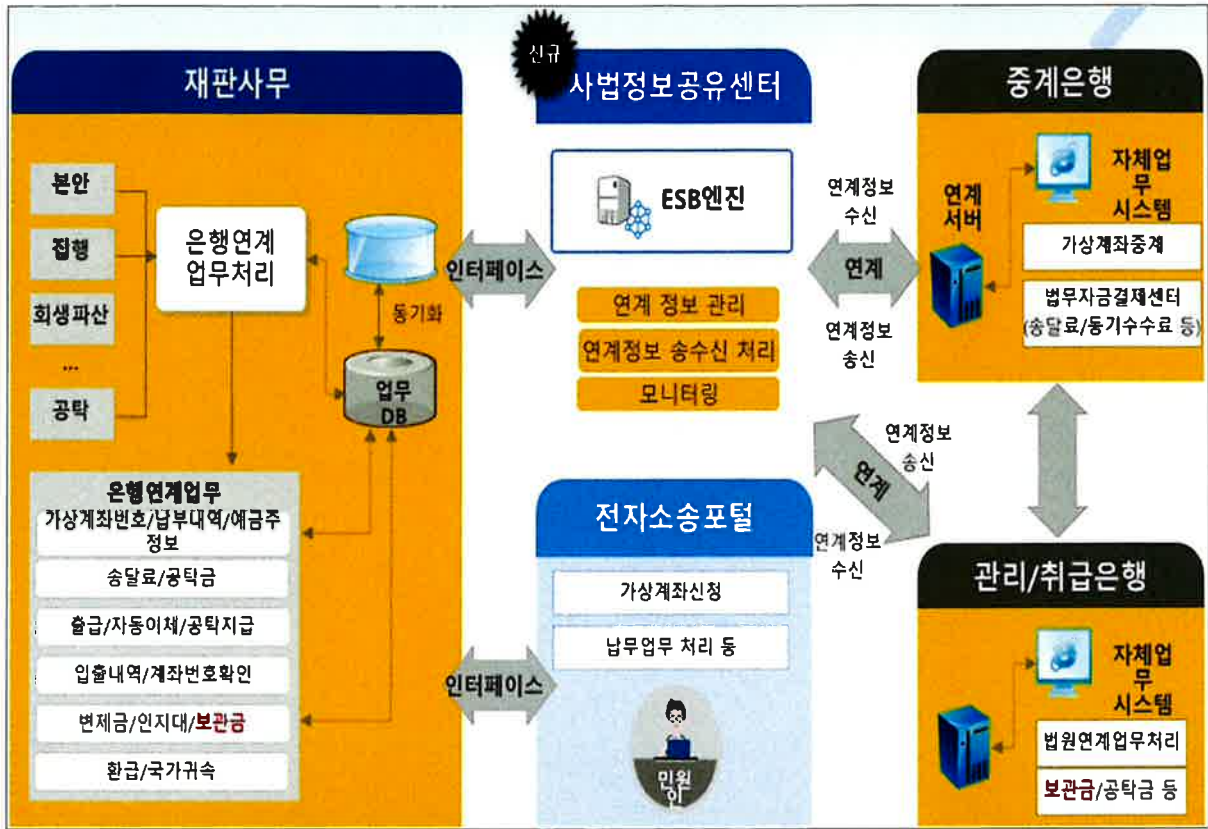
- 전자소송 관련 비용납부를 위해 법무자금결제센터를 통해 10개 보관은행의 가상계좌번호 채번하고, 각 은행에 납부된 결과를 법무자금결제센터를 통해 납부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동기화함

### ● 동기축탁수수료, 집행관보관금 시스템

- 동기시스템과 연계된 건으로 해당 담당자 확인이 필요함

## ▣ 차세대 시스템 구성(통합)

3) SCServ : SupremeCourt Serv의 약자로 과거 사법정보화실에서 직접 개발한 연계시스템



## 2) 각 시스템별 연구 범위

### ▣ 전체적인 측면

- 법원 관리 자금 운용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법원 입장에서의 취약성 또는 불합리를 지적하고, 장·단기 개선 전략안을 제시
- 법원이 법원의 모든 자금 수납 및 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 신한은행 법무자금결제센터와 유사한 “대법원 금융센터”의 설치
  - 궁극적으로는 현재 은행이 하는 역할의 대부분을 법원이 하는 것으로서, 예산, 인력, 소요기간 등의 검토가 필요함

### ▣ 송달료 관리은행

- 현재는 송달료 수납은행(공탁금 보관은행과 거의 일치함)과 송달료 관리은행(신한은행)으로 나누어 있음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 수납은행이 송달료를 수납하는 경우 송달료 자금 및 정보를 관리은행으로 보내고 관리은행은 사건들의 송달료잔액에서 우편요금·정보수신요금의 지급준비금을 보관하였다가 매월 20일에 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정보수신요금을 우체국 또는 통신중계회사에 지급함
  -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은행들도 송달료 관리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송달료 관리은행 대체 방안)
  - 시스템 현황 및 구축비용, 개발기간, 소요인력 등 파악
- 개인회생변제금·인지대·등기신청수수료 관리은행
- 개인회생변제금
    -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법원별 관리은행(신한은행)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회생채무자는 이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회생변제금을 송금하며, 관리은행은 위 별단예금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분배함
  - 인지대
    - 인지대 수납은행(공탁금 보관은행과 거의 일치함)과 인지대 관리은행(신한은행)으로 나누어 있음
    - 수납은행은 매 영업일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계정에 입금하고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송부함
    - 관리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수납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입징수관에게 전송함(관리은행의 역할은 당일 수납된 금액을 정리하여 각급 법원에 전송하는 것일 뿐, 금전을 수수하지 않음)
  - 등기신청수수료
    - 수납금융기관(수납금융기관 중 현금수납업무를 총괄하는 수납관리기관이 있음)은 수수료(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를 공제한 금액을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함



- 개인회생변제금·인지대·등기신청수수료 관리은행
  - 위 ‘송달료 관리은행’ 과 동일하게 다른 은행들도 관리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은행들도 관리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시스템 현황 및 구축비용, 개발기간, 소요인력 등 파악
- 중계은행
  - 다른 은행들도 중계은행(가상계좌 발급 및 처리 업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중계은행 대체 방안)
  - 중계은행 없이 모든 은행들이 각자 가상계좌번호를 채번한다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지 등도 검토 필요

### 3. 진행사항 보고 및 최종결과물 제출

#### 가. 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중간보고 : 착수 후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용역 기한 이내

#### 나.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 기한 이내

- 최종 결과물 제출 내역
  - 최종보고서 : A4 규격의 책자형 20부, 동 내용이 담긴 CD 2장 요약본 10부, 동 내용이 담긴 CD 1장
  - 최종보고서 제출 전 별도로 10부의 가제본 제출 필요